

第243回國會
(定期會)

政務委員會會議錄

第 16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3年11月21日(金)

場 所 政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約款의 規制에 關한 法律中 改正 法律案(이훈평 의원 대표발의)
2. 約款의 規制에 關한 法律中 改正 法律案(정부 제출)
3. 獨占 規制 및 公正 去來에 關한 法律中 改正 法律案(이훈평 의원 대표발의)
4. 獨占 規制 및 公正 去來에 關한 法律中 改正 法律案(안대륜 의원 발의)
5. 獨占 規制 및 公正 去來에 關한 法律中 改正 法律案(정부 제출)
6. 下都 給 去來 公正化에 關한 法律中 改正 法律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7. 下都 給 去來 公正化에 關한 法律中 改正 法律案(정부 제출)
8. 가맹사업거래의 公正화에 關한 법률 중개 정법률안
9. 靑少年 保護法中 改正 法律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
10. 靑少年 保護法中 改正 法律案(정부 제출)
11. 복권의 발행 및 관리에 關한 기본법안
12. 복권 및 복권기금법안

審査된 案件

- 의사일정상정의건 2
- 1. 約款의 規制에 關한 法律中 改正 法律案(이훈평 의원 대표발의)(이훈평 · 강운태 · 김상현 · 김성호 · 김옥두 · 박양수 · 배기운 · 송석찬 · 이낙연 · 장성원 · 전갑길 의원 외 1인 발의) 2
- 2. 約款의 規制에 關한 法律中 改正 法律案(정부 제출) 2
- 3. 獨占 規制 및 公正 去來에 關한 法律中 改正 法律案(이훈평 의원 대표발의)(이훈평 · 김근태 · 김옥두 · 박양수 · 배기운 · 송석찬 · 신기남 · 심재권 · 이낙연 · 전갑길 · 정동채 · 최선영 의원 발의) 2
- 4. 獨占 規制 및 公正 去來에 關한 法律中 改正 法律案(안대륜 의원 발의)(안대륜 의원 외 20인 발의) 2
- 5. 獨占 規制 및 公正 去來에 關한 法律中 改正 法律案(정부 제출) 2
- 6. 下都 給 去來 公正化에 關한 法律中 改正 法律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 · 강창희 · 유시민 · 김홍신 · 김용학 · 김원웅 · 김문수 · 장태완 · 이부영 · 이재오 · 김성순 · 이미경 · 이호웅 · 박명환 · 장성원 · 권기술 · 심재철 · 이경재 · 정몽준 의원 발의) 2
- 7. 下都 給 去來 公正化에 關한 法律中 改正 法律案(정부 제출) 2
- 8. 가맹사업거래의 公正화에 關한 법률 중개 정법률안(정부 제출) 2
- 9. 靑少年 保護法中 改正 法律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임인배 · 고흥길 · 김광원 · 권오을 · 김성조 · 김용학 · 김윤식 · 김정숙 · 박재욱 · 박혁규 · 백승홍 · 서상섭 · 손희정 · 신영균 · 신현대 · 오세훈 · 윤두환 · 윤한도 · 이규택 · 이상배 · 이연숙 · 이해봉 · 정갑윤 · 조용규 · 최돈웅 · 홍준표 · 안택수 · 송광호 · 이재선 의원 발의) 2
- 10. 靑少年 保護法中 改正 法律案(정부 제출) 3
- 11. 복권의 발행 및 관리에 關한 기본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김문수 · 권태망 · 김만제 · 김영선 · 김용

균·김원길·김윤식·남경필·맹형규·박진·박상규·박원홍·박종희·서상섭·심규철·안상수·안택수·유용태·이근진·이방호·이상배·이성현·이재오·이주영·임인배·임진출·임태희·전용원·정갑윤·정문화·정병국·조성준·조정무·주진우·허태열·홍준표 의원 발의) … 3

12. 복권및복권기금법안(정부 제출) 3

(10시30분 개의)

○委員長 李在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관계로 시간이 약간 늦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6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 8건과, 청소년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 2건, 그리고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마친 다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상정의견

○委員長 李在昌 그리고 법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 金文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의발행및관리에관한기본법안, 안대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국회 기간 중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예산 부수법안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은 예산 부수법안은 아니지만 소비자와 하도급자 및 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고,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않으면 16대 국회 임기 말로 폐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다루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李訓平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또한 정부에서도 제출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그리고 李訓平 의원 및 안대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에서도 제출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김부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정부에서도 제출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정부에서 제출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林仁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에서도 제출한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 金文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의발행및관리에관한기본법안, 정부에서 제출한 복권및복권기금법안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約款의規制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훈평 의원 대표발의)(이훈평·강운태·김상현·김성호·김옥두·박양수·배기운·송석찬·이낙연·장성원·전갑길 의원 외 1인 발의)

2. 約款의規制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3.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훈평 의원 대표발의)(이훈평·김근태·김옥두·박양수·배기운·송석찬·신기남·심재권·이낙연·전갑길·정동채·최선영 의원 발의)

4.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안대륜 의원 발의)(안대륜 의원 외 20인 발의)

5.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6. 下都給去來公正化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강창희·유시민·김홍신·김용학·김원웅·김문수·장태완·이부영·이재오·김성순·이미경·이호웅·박명환·장성원·권기술·심재철·이경재·정몽준 의원 발의)

7. 下都給去來公正化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8.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靑少年保護法中改正法律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임인배·고흥길·김광원·권오을·김성조·김용학·김윤식·김정숙·박재욱·박혁규·백승홍·서상섭·손희정·신영균·신현태·오세훈·윤두환·윤한도·이규택·이상

배·이연숙·이해봉·정갑윤·조웅규·최돈웅·홍준표·안택수·송광호·이재선 의원 발의)

10. 靑少年保護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1. 복권의발행및관리에관한기본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김문수·권태망·김만제·김영선·김용균·김원길·김윤식·남경필·맹형규·박진·박상규·박원홍·박종희·서상섭·심규철·안상수·안택수·유용태·이근진·이방호·이상배·이성현·이재오·이주영·임인배·임진출·임태희·전용원·정갑윤·정문화·정병국·조성준·조정무·주진우·허태열·홍준표 의원 발의)

12. 복권및복권기금법안(정부 제출)

(10시35분)

○**委員長 李在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李訓平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정부에서 제출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李訓平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안대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정부에서 제출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김부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정부에서 제출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정부에서 제출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林仁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정부에서 제출한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金文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의발행및관리에관한기본법안, 의사일정 제12항 정부에서 제출한 복권및복권기금법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이상 1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李訓平 의원, 김부겸 의원, 林仁培 의원, 金文洙 의원, 안대륜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대표발의자의 요청에 따라 제안설명을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정부 제출 법률안 중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 4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건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4건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公正去來委員長 姜哲圭** 존경하는 李在昌 위원장님, 그리고 정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약관규제법에 의거 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한 약관을 심사하여 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왔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표준약관 보급 업무를 강화하여 연간 10건~15건의 표준약관을 보급함으로써 현재 22개 분야 53개의 표준약관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약관의 보급은 사후적·개별적 불공정약관 규제방식의 한계를 극복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업무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표준약관의 보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나, 현행 약관규제법에서는 표준약관의 심사 청구 주체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한정되어 있어서 사업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아니할 경우 표준약관 보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가임대차, 건강식품 판매, 자동차 정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다수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분야에서 표준약관 보급이 늦어지고 있는 사례가 이러한 문제점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약관 심사 청구 주체에 관한 조항을 개선하여 표준약관 보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금번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럼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표준약관의 보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동일·유사한 불공정약관에 의한 피해가 반복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표준약관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 제도를 시행함과 동시에 동 표지의 허위 사용 등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

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의 구조 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 정부는 우리 경제에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말 시장 개혁을 위한 단계별 추진과제와 일정을 담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잠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최종안은 12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시장 개혁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 및 한국 경제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직접규율 방식보다는 기업 스스로 내·외부 감시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와 기본방향 아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안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큰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개별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고하기 위한 단계별 정책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안의 내용 중 우선적으로 추진할 단기와제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과제들은 제시된 일정에 따라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형태의 설립·전환에 대해서 부채비율 및 자회사 지분율 요건의 유예가 인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부채비율에 대한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한편 지주회사의 건실한 소유·지배 구조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간 출자를 금지하고, 자회사의 손자

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기업결합 심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기업결합의 상대회사가 소규모, 예컨대 30억 원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독과점 형성 우려가 있고 복잡한 기업결합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서 심사 연장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 발생 시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소를 제기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시정조치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행위를 한 자가 고의·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책임을 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의 전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넷째,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내부거래의 효과적인 조사를 위하여 2004년 2월 4일로 시한이 만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지속적인 조사로 부당내부거래가 많이 감소하였으며 이에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역할이 컸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직 불합리한 관행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의 추진기간 동안 더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 최고 한도를 관련 매출액의 5%에서 10%로 인상하고, 내부지침으로만 운영 중인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근거규정을 법률에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법률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월적 지위를 지닌 원사업자가 하도급과 관련된 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선금금 등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지연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이자의 산정기준이 되는 이자율에 대해서 현행 규정은 구체적인 범위나 기준을 정

하지 아니한 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위임규정의 구체성·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인용 법률상의 용어의 변경, 거래 형태의 변화 등에 따라 나타난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어 금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의 산정기준이 되는 지연이자율의 상한을 연 100분의 40으로 정하고, 지연이자율 산정 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 대출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이 증가하고 기명날인 외에 서명이나 전자서명이 보편화됨에 따라 전자문서 및 서명이나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과 관련하여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한 조사나 법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사 등과 관련하여 준용하고 있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동일하게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인용하고 있는 법률상의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공사업자”를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 등)”을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으로 개정하여 변경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박병석 의원 등의 발의로 제정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상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상담사는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당사자 간 법률관계 상담 등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 형성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상담사의 자격요건을 법률규정으로 명확화하고, 자격시험 및 실무수습을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상담사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요건을 법률규정으로 명확화하였습니다.

둘째,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다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다른 자격증의 예에서처럼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치면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등록은 영업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으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시험 및 실무수습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在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許成寬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部長官 許成寬 행정자치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李在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청소년 보호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에서 제출한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들이 일간신문에 게재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청소년의 접촉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유흥집객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 일간신문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지 않았으나 스포츠신문이 일반 일간신문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기존의 일반 일간신문을 제외한 스포츠·오락 등을 다루는 일반 일간신문에 대하여는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등 법 의무 준수 의식 고취 및 법 준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등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성행하고 있는 티켓다방에서의 청소년 고용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외부에 다류를 배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넷째 청소년에게 성적접대행위, 유흥행위 등 유해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선불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전 업주의 채권을 인계받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에게 금전채무 등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무효로 함과 동시에 업주의 청소년에 대한 채권 변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끝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스포츠신문 등 일회성 매체물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속적인 발행 횟수 6회 중 2회 이상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在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권및복권기금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朴奉欽 기획예산처장관이 해야 되겠습니까마는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진행이 되어서 卞良均 기획예산처차관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위원장이 동의를 했습니다.

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處次官 卞良均 존경하는 李在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복권및복권기금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복권및복권기금법안의 제정 목적은 현행

복권시장의 과당경쟁 및 비효율성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0개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복권발행기관을 기획예산처로 일원화하고, 복권업무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복권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복권기금을 신설하여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복권 당첨금의 최고한도 설정, 청소년에 대한 판매 제한, 구매 대행 규제 등 과도한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복권발행기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통합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외에는 복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하되,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률에 의하여 복권을 발행하는 기관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5년간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온라인복권의 무질서한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온라인복권의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복권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온라인복권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복권의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복권의 종류별로 최고 당첨금을 고시하도록 하고, 복권의 유통비용은 복권 판매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의 운용 등에 따른 수수료의 최고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복권의 발행 및 관리,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 복권 발행업무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복권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섯째,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설치하고 복권기금의 수익금 중 100분의 30은 현행 10개 발행기관의 기존 용도에, 나머지 100분의 70은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국가 균형발전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각종 벌칙을 규정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복권및복권기금법안에 대하여 기본취지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복권및복권기금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在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약 30분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許成寬 장관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청소년 보호업무는 위원장인 청소년보호위원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장관께서는……

지금 예결위가 열려 있지요?

○**行政自治部長官 許成寬** 예.

○**委員長 李在昌** 가서서 참석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장관께 꼭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간단히 질의를 해 주시고, 장관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특별히 안 계시면 許成寬 장관께서는 자리를 뜨시도록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林鎮出 委員** 청소년보호위원장이 재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서도 되리라고 봅니다.

○**委員長 李在昌** 그러면 許成寬 장관님은 예결 특위에 참석하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卞良均 차관께서는 이게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질의를 하실는지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예결위에 참석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지요?

○**企劃豫算處次官 卞良均** 예결위에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昌** 그러면 차관은 자리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12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訓平 委員** 요점만 간단히 하세요.

○**首席專門委員 尙元鍾** 예,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李訓平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로 명시·설명 의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보다는 업종별·거래 유형별로 약관의 양태가 다양하므로 관계부처에 맡기는 것이 이중규제도 피하고 규제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조치의 공표 및 통지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함에 있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거나 고객에게 통지할 것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하면 소비자의 권리 구제를 촉진하고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 내지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공익적 기능이 있는 반면, 사업자에게는 법원의 무죄판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급격한 이탈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바, 이 문제는 시정조치에 대한 언론 보도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공표 등을 통해 일반인에 대한 권리 구제 및 예방효과 등은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한 것이므로 사업자에게 공표 및 통지를 명령하는 등 제도의 도입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관청인가약관의 사전 협의문제입니다.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약관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미 약관법 제18조 등에 의해 관청인가약관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시정조치할 수 있는 사후 통제장치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제30조에는 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해서는 다른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이 우선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동 개정안과 같이 모두 관청인가약관의 작성 또는 인가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에 의한 표준약관의 제정은 정부안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부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표준약관의 심사청구제도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만 부여되고 있으나,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을 마련하지 않고 심사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표준약관이 보급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 제19조의2 제2항에서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표준약관 마련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공정약관 피해가 반복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등에게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수 있는 권고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4항에서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4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사업자가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항에서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항에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표준약관 심사 청구 관련 조항을 확대해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도 주도적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소비자주권을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조정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李訓平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소비자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새로이 압수·수색권 등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고, 이 경우 조사공무원을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로 의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EU 가맹국별 강제조사권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강제수사권이 부여된 나라는 독일 프랑

스 등 11개국이고, 강제조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이탈리아 등 4개국입니다.

이 문제는 부당공동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내부자 및 제3자의 신고 없이는 쉽게 적발하기 힘든 속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한다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의 지나친 집중 및 이에 따른 권한의 남용 우려, 기업 부담의 가중 등의 단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제수사권을 제외한 포괄적인 조사권과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보유하고 있는바, 강제수사권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안대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명제청권을 위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것은 합의제기관의 근간을 이루는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다양한 전임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개선하는 한편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이 상하관계에 있으며 위원의 제청이 위원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이 사실상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부 위원의 추천을 재정경제부장관 법무부장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한국소비자보호위원장 등에 부여하고 있는 개정안은 위원의 독립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추천기관이 다양화해질 경우 추천기관의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입법례를 살펴보면, 위원장에게 모든 위원의 제청권이 주어진 경우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등이 있으며, 추천기관의 추천으로 위원을 임명하는 입법례는 금융감독위원회 방송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에서 준사법적인 기관의 위치를 부여하고 있는 점과 개정안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 법무부장관 등이 공정거래위원회 위

원을 추천할 경우에도 정부의 영향력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므로 국회 등에서 일정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주회사제도 및 기업결합심사제도를 개선하고 2004년 2월 4일로 시한 만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시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지주회사제도의 보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부채비율 요건에 대한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또 유예기간이 인정되는 지주회사의 일정한 전환유형을 모든 유형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회사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 자회사 간 출자를 소유·지배구조의 단순·투명성 확보라는 지주회사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요건도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을 요건과 같이 50%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회사 간 출자를 금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지주회사가 이미 자회사 지분의 50%를 보유하여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를 출자할 유인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동 규제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요건의 신설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지배력 확장이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현행 자회사에 대한 유예기간을 상당기간 인정하여 동 요건 충족을 위하여 기존 자회사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바, 행위제한규정 위반에 대해 법 위반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부상 부채액 및 주식가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법률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법 위반금액을 자본총액을 초과한 부채

액, 소유주식의 장부가액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어느 시점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법 위반금액 판단을 위한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법 위반금액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기업결합의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 원 이상)의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이외에는 기업결합 완료 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후 신고제하에서 당해 기업결합을 금지할 경우 원상 복구가 곤란한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서는 대규모회사의 주식 취득을 완료 전 신고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사전 기업결합 심사 신고대상 유형에 대규모회사의 주식 취득의 경우를 추가하고 있는바, 주식 취득이 기업결합 신고 건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후 신고제하에서 기업결합이 금지되는 경우 기업이 원상 복구로 인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장내 거래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상장주식의 공개 매수에 의한 주식 취득의 경우 공개매수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날 등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 기업결합심사가 종료할 때까지 주식 소유가 금지되어 기업결합 심사 종료일인 최장 120일까지 주식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기간인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기간에 공개 매수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되, 증권거래법과의 상충문제가 우려됩니다.

다음 기업결합 심사기간의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최장 90일까지 기업결합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30일을 연장하여 최장 120일로 심사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동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 행위 또는 주식소유, 주식인수행위 등이 금지되는 등 불안정한 법적관계를 최대한 조기에 확정시킬 필요성도 존재하므로 연장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요구

권 시한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2003년 현재까지 대규모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실적은 8차례에 걸쳐 조사하여 총 지원성 거래규모 28조 7917억 원 중 30.9%에 해당하는 8900억 원을 계열사에 지원하였으며, 총 286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발동실적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17차례에 걸쳐 543건의 금융거래정보를 제출받았고, 그로 인해서 과징금 부과실적은 총 5건으로 부당 지원금액은 297억 9800만원이고 부과한 과징금은 203억 5800만원입니다.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발동으로 적발한 부당내부거래 규모를 전체 부당내부거래 조사실적과 비교하여 보면, 지원성 거래규모는 전체 28조 7917억 원 중 2.1%에 해당하는 6043억 원이며, 지원금액은 전체 8900억 원 중 3.3%에 해당하는 298억 원이고, 과징금 부과 비중은 전체 2863억 원 중 7.1%에 해당하는 204억 원으로 실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통한 적발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발동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내부거래 조사 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공정거래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발동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과 같이 그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조사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발동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도 458건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폐기하여 이에 대한 사후 통제가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록 보존기한을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등 동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남용 방지 및 책임성 강화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연장 여부에 대한 검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연장 여부는 현재까지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발동으로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한 실적과 허위 내부거래 공시에 대한 엄격한 제재, 금융거래정보요구권에 대한 남용의 가능성 및 이상에서 제기한 양 주장 등을 비교 형량해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결정해

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범위반사실 공표명령과 손해배상청구제도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이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 행위를 행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원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하도급법 적용범위를 넓히고 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의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원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는 제2조제2항의 단서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매출액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연간매출액이 적은 영세 소기업에까지 하도급법을 적용할 경우 영세 소기업은 하도급법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할 의지나 능력이 부족해서 법적용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적자치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 하도급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지급보증서 교부가 의무화되는 등 관련 법령의 보호장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는 법원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거의 모든 중소기업자에 대해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만일 필요하다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연간매출액 규정을 하도급거래 피해사태 및 빈도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일정 수준 연간매출액 상한을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은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서 지연이자율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위임규정의 구체성·명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부분을 “연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대출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요소인 법정이율 규정을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인 고시로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바, 개정안의 배경이 된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의 규정과 같이 법규명령인 대통령령에 이를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시험을 시행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또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시험의 시행·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林仁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 선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청소년보호법 제17조 또 청소년보호법 제20조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 전단지라든가 입간판 등 광고 선전물을 배포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결정되는 스포츠신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 일간신문으로 등록된 일부 스포츠신문이 청소년 유해성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 일간신문으로 등록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동 신문 등에 대해서도 종전과 같이 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제한으로 청소년유해업소 업주 등이 연령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등의 증표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신분증 거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법 준수 자체가 곤란하다는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증

표 제시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증표 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같이 마련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규정에서는 금지대상 업소를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에 한정하고 있어 무허가 영업행위에 따른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게 되는바, 무허가 영업행위를 이 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청소년유해매체물 발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로서 현재 연속적인 발행 횟수 6회 중 2회 이상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자에 대하여 2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간행물에 유해표시 및 포장을 한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횟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연속적인 발행 횟수 6회 중 2회 이상의 하한규정은 과징금 부과의 위법성이 발생하더라도 연속적인 발행횟수 6회 중 1회까지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2회부터 부과한다는 것으로 법률 위반을 1회까지는 허용한다는 입법인바, 오히려 법률 위반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고 법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반 횟수의 경중은 실제 과징금 부과액으로 차별화하고, 2회 이상의 하한규정은 삭제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 金文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복권의발행및관리에관한기본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복권및복권기금법안에 대해서 함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률안의 소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입니다.

복권발행기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법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권기금의 운용·관리 주체 또한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법안의 소관부처는 기획예산처로 볼 수밖에 없고, 특히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독립위원회의 지위가 부여되어

있지 않는 복권제도심의위원회는 법률적으로 국무총리 소속하의 부속기관에 불과해서 기획예산처장관의 결정에 대한 법적 기속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복권발행기관 및 기금의 운용·관리규정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 없이는 국회법상 소관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복권기금의 설치 관계 문제입니다.

2002년도보다 3배 가까이 증가된 복권 수익금의 관리를 위해서 복권기금을 설치하고 있고, 수익금 배분에 있어서도 기존 10개 기관에는 2003년도 수익금에 상응하는 규모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이 법에서 새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10개 기관과 여타 기관 간의 형평성과 국가 재원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주체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권 수익금의 사용분야가 정부예산 및 여타의 기금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어 이를 운용·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중앙관서가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감독기관 지위에 있는 기획예산처가 동시에 동 기금의 운용주체를 겸하는 것은 감독기관으로서의 견제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고, 정부조직법상 기획예산처의 소관업무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범주에도 벗어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 기금의 기금관리기본법 적용 문제를 살펴보면, 기금관리기본법 별표를 개정하여 안부칙에서 동법의 적용대상을 기금으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법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이 법 부칙에서 동법을 개정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개정안 제25조에서는 동 기금의 여유자금을 국채·공채의 매입,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금융기관에의 예탁 등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사업소요액 책정에 기획예산처의 판단이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유자금의 운용을 재특회계 등과 같은 장기성자금의 재정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정부 예산당국으로서의 기획예산처 입장에 치우친 여유자금

의 운용이 이루어질 개연성을 크게 하는바, 복권수익금의 예산화에 따른 역진성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27조에서는 복권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서 전액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 내에 목적성 없는 자금을 별도로 조성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지금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으나 법안에 민간위원의 비중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따라 그 결정내용을 상당 부분 달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구성비율을 이 법에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최고 당첨금의 제한 문제입니다.

金文洙 의원이 발의하신 안에는 모든 복권의 종류별로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정부안에는 법정한도를 두지 않고 정부의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 당첨금의 제한 문제는 당해 복권의 시장성과 직결되는 사안인바, 최고 당첨금 법정상한 10억 원의 규모는 온라인복권 판매 폭등현상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규정을 설치할 경우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복권 판매점의 추가 개설계획과 맞물려 관련 종사자의 피해 발생과 국제자유도시 추진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주도 등 현 복권발행기관의 수익금 급락 등 시장 급랭에 따른 제반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복권의 구매대행 금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 구매대행업자의 투자비용 등을 감안해서 정부안에서는 1년간 유예하고 있습니다. 동 영업이 제도권의 승인이나 장려 없이 스스로의 투자 판단에 의해서 영위되고 있고, 현행 계약 판매점체계를 편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바, 법률로 그 기득권을 보호해 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매자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동 업종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터넷복권사업자 등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를 선정·운용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李在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아까 金文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복권의발행및관리에관한기본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지 못하셨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있어 위원장은 이 법안의 중요성과 또 지금 기획예산처차관이 참석해 있는 자리에서 제안자로서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文洙 議員** 제가 복권의발행및관리에관한기본법안을 국회 민생정치연구위원회 회장 자격으로 대표발의했습니다.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법안이 발의된 이후 저희 홈페이지 사이트에 1일 거의 1000건 이상이 접수되었고, 드디어 홈페이지가 다운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과 지구당사무실 등에 온 낙선운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협박성 전화가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생정치연구위원회에서 개최한 공청회도 저희가 개최한 어떤 공청회보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서 항의성 발언 내지 협박성 발언이 계속되었습니다. 대단히 놀랄 정도였는데, 복권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법안을 제출한 후 조정실장님이나 총리께서 이런 협박에 상당히 많이 시달린 것으로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니까 이와 관련이 있는 업체가 첫째는 국민은행입니다. 두 번째가 KLS, 대협업체입니다. 세 번째가 복권판매업체입니다. 네 번째가 각 포털에 있는 구매대행업체입니다. 이러한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폭력적 테러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미 우리 국민 70% 정도가 로또복권을 구매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실제로 복권에 맞을 들인 국민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면서 보다 화끈한 사행성과 도박성이 감소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는 메커니즘이 우리 사회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깊이 체감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제가 이 복권법을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건전한 방식도 아니고 우리 사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한다, 누군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은 고쳐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법안을 내 주셨는데 저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용기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 아니면 누가, 어떤 정치인이 이것을 하겠느냐, 다른 국회의원들도 이것하셨다가 된통 당하고 물러섰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물러서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저희 보좌관한테까지도 ‘다음에 낙선이니까 일자리 구하라’는 협박성 글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 지역에 있는 복권 판매업자들이 저를 면담하자고 하는 등 압박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낙선을 감안하지 않고서는 못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나라가 건전한 방향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주요한 한 측면으로 보기 때문에 제대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정부 부처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제안한 것 중 ‘복권발행조정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한다’, 이것은 국무총리실에 그대로 있고 국무조정실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안인데 기획예산처가 예산이나 기금을 관리하는 정부안보다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조정실은 여기에 아무 이해관계도 없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 부처가 다투기 쉬운 것을 조정해 주는 수고로움을 더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권한을 더 드렸습니다.

그다음 제안 중에 최고 당첨금 제한 규정을 10억으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물론 정부안은 복권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종류별로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어떤 복권이든 10억

은 넘지 못하게 하자,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그러면 시장이 급랭해서 재미가 없을 텐데 그렇게 심심한 도박을 누가 하겠느냐, 화끈하게 400억, 심지어는 로또가 800억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정도는 되어야 눈이 확 뒤집혀서 달라붙지 누가 10억 보고 심심해서 하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올라오는 것은 2등한테 나누어 주자는 것입니다. 2등과 1등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1등이 407억 받을 때 2등은 2억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액을 좀 줄여서 1등을 줄이는 대신 2등을 많이 늘려 주자는 것이지요. 그것 심심해서 못 하겠다, 그것을 왜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박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편잔을 많이 받았습시다마는 사행성과 공익성, 이 두 부분 사이에서 우리는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사행성은 좋지만 과도한 것은 좀 제한하고 공익성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일 아니냐 해서 제가 10억으로 하자는 것인데 액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너무 과도한 사행성을 부추길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위원님들께서도 법안 심사를 할 때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월 금지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2회까지 이월합니다마는 저는 이월을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그다음에 구매 대행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다고 봅니다. 다만 현행 정부안에 '1년간 유예해서 2005년부터 규제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행 구매 대행도 불법이고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예.

○金文洙 議員 그렇기 때문에 현행 구매 대행 부분은 안 됩니다. 즉각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포털사이트 같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것들은 신설해서 해 주면 됩니다. 만약 당첨이 되었더라도 대행한 사람이 표를 나누어 주지 않으면 돈을 떼어 먹어도 규제방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허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측에서는 이것을 유예할 것이 아

니라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은 입법과 동시에 구매 대행을 해 주어야 되고, 나머지는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복권의 허점 중 구매 대행 부분이 가장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제 안에 복권 수익금 사용에 대한 것을 국회에 보고토록 했는데 이것은 절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안이 꼭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복권발행기관 통합문제에서 이것을 기획예산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기획예산처는 어디까지나 각 부처에 대한 견제기관이 되어야지 어떻게 운용 주체가 되어 돈 보따리를 운영하는 데처럼, 준조세적 성격을 가지는 것처럼 복권 판 것을 받아 가지고…… 또 수익금 사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는 기존 개별법에 의해 복권을 발행하던 10개 부처에 배분하고, 70%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새로운 공익적 사업에 쓰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복권의 원 취지를 가장 훼손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돈에 눈이 어두워 도박판을 벌여 가지고 70%의 고리를 뜯는 꼴이 됩니다.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발상 자체가 틀렸습니다.

예를 들면 보훈처에서 하는 복권은 보훈기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에게 돈을 드리게 하기 위해 복권사업을 한다, 이것은 사행성을 넘을 수 있는 공익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택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로또는 목적도 모르고 벌여 놓은 다음 나중에 70%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완전히 준조세 내지 정부가 도박판을 벌여서 소득 역진성에 맞는 희한한 돈을 거둬 가지고 법률과 국회의 통제를 벗어난 사업 추진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칫 정부 전체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昌 金文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습니다.

12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까마는 각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金允式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통상의 예에 따라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진하면 5분을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林鎮出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昌 예.

○林鎮出 委員 지금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차관에게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미리 하시게 한 다음 먼저 하시게 하는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昌 기획예산처차관, 지금 이 자리를 떠야 될 상황입니까? 아니면 견해가 상당히 많이 다를 수 있는 복권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企劃豫算處次官 卞良均 그런데 저희들을 지휘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에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장님이 모든 것을 다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제가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昌 위원님들, 특별히 기획예산처차관한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金允式 委員 제가 하나만 먼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昌 그러면 金允式 위원 말씀하십시오.

○金允式 委員 경기도 용인 출신 한나라당 金允式 위원입니다.

먼저 卞良均 기획예산처차관님 계실 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로또복권 수익금의 70%는 임대주택 건설 또는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국가균형발전사업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국가균형발전사업의 내용을 무엇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企劃豫算處次官 卞良均 그것은 서민주택에만 치중해서 할지 아니면 국가 균형발전 쪽도 할지 나중에 복권제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현재 내용이 특별히 결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金允式 委員 그러나 지금 존경하는 金文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것을 준조세적 성격

으로 막연히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의 복권은 다 나름대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체육진흥기금이나 보훈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절대 태부족인 것을 메우는 데 있어 복권 구매자가 선의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또복권 판매가 잘 되니까 통합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프로포션(proportion) 30 대 70은 너무 언밸런스합니다.

또 국가 균형발전은 지금 수도권, 비수도권 해가지고 사실 국회의원 간에도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나 기존의 수도권 비대화 현상이 역설적으로 IT라든지 지식정보화시대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IT라든지 원천기술이 미국에서 개발되지만 CDMA만 해도 한국에서 시장 테스트가 되어 중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비용의 광케이블이라든지 브로드밴드(broadband)가 수도권에 컴팩트하게, 전체 인구의 47%가 모여 있다 보니까 오히려 SOC에 해당하는 투자비용이 적어서 역설적으로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균형발전사업이라고 해서 지방의 양여금이나 이런 쪽의 부족한 재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쓰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충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신중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택 안정과 관련하여 임대주택 건설도 그렇습니다. 지금 임대주택, 서민주택을 많이 건설한다는 명분하에 있지만 건설하는 데가 전부 수도권 외곽, 이미 신도시가 개발되는 데에다가 용도 변경해서 짓고 있고 일부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서민들이 이용하는 임대주택의 위치로는 통근거리가 멀기 때문에 수도권의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04년도 총예산을 보면 SOC 건설, 중소기업 지원은 오히려 6, 7% 줄여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물론 기획예산처에서도 적자 재정으로 고민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투자성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비시장경제적인 조치와 주택 거래

신고 및 허가제까지 갈 경우 그나마 주택경기마저 완전히 냉각된다면 더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류중심 국가를 지향하는 거대한 그랜드 디자인하에서 SOC 건설은 적자 재정이라 하더라도 해야 되고, 수도권 외 임대주택이라든지 주택 가격 안정은 광역철도 같은 교통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출퇴근 거리를 단축시켜 주는 것이 서울의 강남 집값 안정에도 기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로또복권을 국가 균형발전 기금에 쓰겠다는 것은 지방에 많이 배려하겠다는 생각 같은데 제가 꼭 수도권 출신 의원이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민간인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많은 자금이 임대주택 건설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세운다면 정부가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처차관께서는 제 질의가 끝났습니다.
○企劃豫算處次官 卞良均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 줄어든 것은 금융성 부분에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신보라든지 기보 쪽 금액이 조금 줄고, 나머지 사업성 기금으로 중소기업 지원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SOC 부분은 지난번 추경에서 상당 부분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조금 납니다.

○金允弼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저에게 첫 번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당내부거래는 사실 시장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 없이 이것을 규제로 생각하면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추적권 연장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 당시 추적권을 상설화해 주지 않은 데서 지금 연장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나쁘니까 이제 없애 주자' 또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가 '그것을 없애 달라', 지금 경기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이것과 출자총액제한제인데 과연 경기가 나쁜 요인이 그것입니까?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기획예산처차관이 계시지만 정부의 저금리, 내수 진작 정책에 의해 대기업의 과잉 중복투자, 구조조정을 해 준 결과 재작년에 상장기업이 17조 원이라는 기록적인 이익이 났고, 작년에는 22조 원의 이익이 났습니다. 대기업들이 회사에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처가 없는 것이 고민이지 이것이 어떻게 현재의 고민입니까?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과거의 실적을 볼 때 계좌추적권에서 징수한 금액은 290억으로 미미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금액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경찰관이 하루 종일 거리에 서 있다가 한 건을 적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금액이 미미하니 경찰관을 거기에 세우지 말자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 나라입니까? 카파라치가 교통위반자를 고발할 때는 교통위반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없애니까 지금 또 다시 늘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듯이 미미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대기업들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정치현금을 냈다면 문제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법인당 한도 얼마, 계열사 50개, 100개 해서 그룹당 100억, 200억……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낸 것은 전부 부당내부거래를 통해서 징수한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견하지 못한 부당내부거래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에 맡겨서 자율규제로 갔고, 내부거래 공시 이행만 점검합니다. 100억 이상 거래, 자본의 10%, 이것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것이고 잘못 해석하거나 운이 나쁘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공시 이행을 하지 않은 회사에 한해서 조사를 했고, 또 LG에 대해 계좌추적을 했더니 그것이 안 나왔다고 하는데,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 지금 LG의 비자금, LG그룹 총수도 출국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금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비싼 값에 상장회사에 팔으로써 조성한 이익금으로 임원들 이름으로 자금을 낸 것을 조사받지 않습니까?

저는 부당내부거래가 이렇게 상존하는 입장에서 경기가 나쁘니까 풀어 주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고 봅니다. 이것은 경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경제에 관한 문제이고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자꾸 이것을 반대해서 많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아니, 소신과 철학이 있는 분이는데 이것을 위원들에게도 설명해 주셔서 왜 이게 필요하나, 만약 이것을 없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올 것이냐 하는 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이것은 연장도 해야 되지만 상설화하고, 또 2조 이상의 집단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이하에서, 심지어 조그마한 벤처기업도 돈 벌면 자회사 하나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전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니까 저는 오히려 확대하고 상설화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법안 연장은 통과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시간은 제외니까 위원장님은 하실 말 있으면 해보세요.

○**委員長 李在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김만제 위원께서 기획예산처차관한테 질의하신다고 했으니까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제 위원, 기획예산처차관이 지금 자리를 떠야 되는데……

○**김만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처차관께서는 몇 마디만 드리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昌** 그럼 우선 몇 마디만 하시고 차관은 자리를 뜨도록 하지요.

○**김만제 위원** 예, 한 2분만 하려고 합니다.

저는 로또복권과 관련해서, 도대체 기획예산처와 국무조정실에서 이런 발상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 참 놀랍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예산을 다루는 기관이 복권을 일원화하여 세금처럼 취급해서 여기 나눠 주고 저기 나눠 주고 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 참 한마디로 놀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위원회에서 다뤄 주실 때도 차라리 金文洙 의원이 제안한 복권과 관련된 개정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元吉 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기획예산처차관이 나가기 전에 나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昌** 예, 金元吉 위원!

○**金元吉 委員** 나는 그전에도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할까…… 이전에

도 얘기했지만 복권이 개별법에 의해 무분별하게, 어떻게 보면 산만하게 발행되어 가지고 개별복권 발행 주체별로 어떤 것은 운영비용도 안 나올 정도의 문제도 있지만 그 하나하나를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상당히 숭고한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든 결과적으로 그 명분을 사는 건데, 이게 로또라는 것을 싹 내밀면서 합쳐 버리고 기획예산처로 갖다 주면 이것은 그냥 제2의 세금화하겠다는 거야.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역진성의 대표 아니에요?

그리고 위원회 만들면 기금이 몇조 원, 몇십조가 될 텐데 그것을 그냥 배정한다? 그건 제2의 예산을 만드는 거라고요. 이럴 필요가 뭐 있는냐는 말이에요. 기본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로또복권이 나와서 당첨금이 한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야. 이것은 필요한 기관별로 로또복권 발행하게 허가만 해 주면 끝나는 거지.

임대주택 건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하고자 하는 기관에게 로또복권을 인정해 주면 끝나는 거고,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하겠다면 해 주면 되는 거지 왜 기획예산처만이 이것을 전부 발행해 가지고 돈 다 걷어서 그것을 제2의 예산처럼 배분해 준다? 나는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지금 예상대로 로또가 잘 돼서 1년에 3조, 4조, 5조, 6조 해서 몇십조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반 예산에 편입해서 예산화하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나는데, 이것은 제2의 세금으로 하기에는 가장 마땅치 않은, 소위 역진성의 대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가장 잘못된 발상이다……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얘기 안 하겠고, 내가 소위원은 아니지만 소위에 들어가 자세한 내용을 강력히 설명할 거예요. 이런 것은 국회에서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이걸 말이 안 돼.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昌** 金 위원님, 그 자료 있으면 심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부겸 위원** 기획예산처차관님, 지금 두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기획예산처가 주도적으로 이런 구도를 만든 것은 아니고, 로또가 오면서 결과적으로 복권에서 배분되는 수익금이 워낙 크니까 이 문제를 그래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기획예산처가 맡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차원인 거지요?

○**企劃豫算處次官 卞良均** 예, 그렇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이런 것을 배분하는 것을 재정 당국에서 하는 나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안은 기획예산처보다 저희가 처음에 제안했고, 지금 金文洙 위원님이나 김만제 위원님이나 金元吉 위원님이 이것을 가지고 아주 개탄하다시피 말씀하시는데,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金文洙 위원님이 처음에 얘기하실 때, 이 법안을 낸 그 자체가 상당한 용기와 인내를 요구했던 겁니다. 벌써 로또복권은 큰 이해관계 그룹이 형성되어서 여기에 변화를 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행정하는 저희들도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길을 저희가 왜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1년 남짓 행정을 맡아 오면서 절감했기 때문에 이런 안을 낸 겁니다.

그 이전에, 세상에 10개의 중앙부처가 복권을 팔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런 현실은 생각을 안 하십니까? 10개의 중앙부처가 복권을 팔아서 사업을 하는, 시작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하셔야지, 이것은 정말 교육지책으로 나온 것이지……

○**김부겸 위원** 자,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지금 가셔야 된단니까 기획예산처차관님한테만 우선 몇 가지 여쭙고……

○**委員長 李在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 위원** 저는 짧게 했는데요. 실장님이 얘기하셔서……

문제는 10개 기금원과 기관에 대한 배분율은 지금까지 복권을 발행해 오던 주체들에 대한 적당한 활동비로서의 근거가 있으니까 이해됐는데, 6개 사업에 대한 배분율은 '시행령에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게 자칫 하면 기획예산처가 돈을 쥐고 여러 가지로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企劃豫算處次官 卞良均** 지금 현재 시행령을 할 때 배분의 차이가 없도록 부처 간에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아니, 배분의 차이가 없지만, 예를 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딱 못 박으면 되지……

○**李訓平 委員** 지금 하는 것은 질의시간에서 빼세요.

○**김부겸 위원** 아니, 이건 차관님한테 잠깐……

○**委員長 李在昌** 아니, 지금 李訓平 위원께서 질의할 시간인데 기획예산처차관이 자리를 떠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고 자리를 뜨도록 사실상 순서를 바꾼 겁니다.

○**김부겸 위원** 그럼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나중에 기금 배분을 할 때 기획예산처가 개입하거나 자의적으로 할 여지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지요?

○**企劃豫算處次官 卞良均** 예, 복권제도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김부겸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처는 말하자면 돈 관리만 할 뿐이지, 숫자 관리만 할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企劃豫算處次官 卞良均** 예, 그렇습니다.

○**김부겸 위원**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在昌** 기획예산처차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李訓平 委員** 저도 한마디만 하고요.

○**委員長 李在昌** 그럼 李訓平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訓平 委員** 다 같은 얘기인데, 결국은 기금의 감독 지위에 있는 기획예산처가 기금 운용 업무까지 담당할 경우에 견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법에서는 기금을 정부 출연금 또는 법률에 의한 민간 부담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부적 성격이 있는 복권 수익금을 정부가 예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지 않고 복권법안 부칙을 통해 개정할 경우 법 제정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보는지 이런 것이 걱정됩니다.

또 정부 제출 제정안 내용에는 복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복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 의견대로 복권 발행기관을 기획예산처로 일원화할 경우 복권 수익금 배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은 가급적 배제하고 민간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국무조정실장이 나중에 답변할 수 있지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예.

○李訓平 委員 그러면 차관은 가십시오.

○委員長 李在昌 더 이상 기획예산처차관께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卞良均 차관 수고했습니다.

○李訓平 委員 공정거래위원장,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정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선급금과 하도급 대금의 지연이자율에 대해 포괄적인 공정위 고시로 위임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인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지연이자율 위임규정에 대해 포괄 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만큼 현행 법률의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 개정안 역시 법률 이율 규정을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인 공정위 고시로 위임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公正去來委員長 姜哲圭 지연이자율은 연체이자율 등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해서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96년부터 공정위 고시에 위임되어 왔습니다.

즉, 중소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 변화를 즉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연이자율 고시는 하도급법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일종이므로 고시로 위임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李訓平 委員 생각되는 게 아니라 그건 확실히 돼야 돼요. 생각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公正去來委員長 姜哲圭 예, 대법원에서도 86년에 ‘국세청장 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이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시로 위임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李訓平 委員 현행 고시에 규정된 연체이자율 연리 25%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연체금리인 15~19%에 비해 너무 높은 수준이 아닙니까?

연체이자율의 설정 기준은 무엇이고, 이자율을 금융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公正去來委員長 姜哲圭 우선 지연이자율은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외에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 정도나 중소 하도급업체의 부도율, 경기 변화, 시중의 유동성 정도 등 이런 경제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또 하도급법상의 지연이자율은 지연 지급에 따른 금융 비용의 보상이라는 성격 외에도 아울러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생각되고, 향후 시중 연체이자율 등 경제여건 변화 추이를 면밀히 주시해서 지연이자율을 하향 조정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訓平 委員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하고, 청소년보호법 중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안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현안으로 국무조정실장한테 잠깐…… 제가 일부러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아까 서면으로 자료는 드렸습니다마는, 수능시험 과문과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지구당에나 국회 사무실로 민원인들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에 치러진 대학수능시험 결과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면서 수능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직 학원 강사가 출제위원으로 선정되고, 출제위원 명단이 학원가에 유포되는가 하면, 수험생 학부모까지 출제위원에 포함됐다는 소문이 나돌아서 수능시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수능시험 출제위원 선정방식과 자격기준은 무엇이고, 문제의 학원 강사가 출제위원에 포함된 경위는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바라고, 출제위원 선정 논란에 있어서 수능시험 문제에 대한 오답 시비가 잇따르고, 외국어영역의 일부 지문이 시중 문제집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수능시험 관련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정밀한 재검토를 하여 문제점이 드러나면 채점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 바라고, 수능시험은 사실상 대학 진학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성적 비관

으로 학생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고 수백만 수험생 가족의 행·불행이 좌우될 만큼 막중한 비중을 지닌 국가적 행사입니다.

금년 수능시험 출제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해 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능시험 전반적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한 뒤 향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능시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뉴스를 보니까 오답 시비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제기된 것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제위원 선정기준은 ‘대학의 전임교원 이상, 평가원의 중진 연구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평가원장이 먼저 출제위원장을 선정하고 출제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또 고려하는 사항이 금년도에 자녀가 수능시험을 보지 않는 사람 중에서 고르고 있고, 또 한 달 이상 장기간 합숙을 하자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신체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이 양반은 모 대학의 초빙교수로 되어 있는데 이 양반이 2002년도에 아마 인터넷 강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는 강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2002년에 한 경험이 있는데 처음에 위원으로 선정할 때 그것까지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 물론 발견했다라면 선정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일부 그런 허점이라까 잘못된 점이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되자마자 국무총리 특별 지시를 내려 가지고 ‘금년도 수능시험 출제와 관련해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그야말로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했고,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능 출제 및 관리 전반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라’고 총리의 지시가 내려져서 현재 여기에 맞춰서 교육부하고 저희하고 세부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책반이 구성되어 있고 현재 진상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무 수행을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징계라든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고, 그와 동시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訓平 委員**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가지고 빨리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안 심의 중인 데도 긴급하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그래서 사실 총리 특별 지시까지 내렸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빨리 종결되고 후속 보완조치가 빨리 가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訓平 委員**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李在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제 위원님!

○**김만제 위원**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에서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 개정안은 2004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 한도를 개정하는 법안을 제출할 테니까 그때 그 법안과 연계해서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다른 것과 달리 압도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 지배구조 개선에 크게 비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재벌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벌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제1차적인 과제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뭐 없느냐, 그게 집단소송제 같은 것입니다. 견제하는 장치를 우리가 만들고,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선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개혁 3개년 계획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어차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보면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출자총액 한도제를 활용하겠다는 것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졸업제도지요. 그 외에도 물론 의결권 괴리가 20% 이하라야 된다, 또 승수가 2 이하여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또 시비가 있을 수 있지요.

또는 계열사가 5개 이하이면 졸업을 시켜 주겠다, 또 집중투표나 서면투표를 도입해서 전원 사

외이사로 구성되는 내부거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으면 그것도 졸업을 시켜 주겠다, 마지막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면 졸업을 시켜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그 외에도 출자총액 한도도 예외조항을 조정하겠다, 부채비율 100% 미만도 삭제해 버리겠다, 그 대신에 유망산업 몇 개는 예외조항으로 넣어 두겠다, 또 외국인 투자의 경우에는 최다출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예외로 인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배구조 개선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3년 안에 우리 지배구조가 현격하게 개선되었다 이렇게 될 사항도 못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출자총액 한도와 연계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어느 정도 한도를 좀 완화해 주어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큰 과제라 되어 있는데 느닷없이 지주회사를 만든다든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기업에 이런 식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특히 지금 경영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그런 기업들을 오히려 차별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부채가 거의 없다, 100% 미만이다, 또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은 이런 기업을 굳이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목적하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부의 세습을 막을 수 있는 포괄상속세제를 운영하면서 지분을 단계적으로 낮추어 나가는 조치를 취해야지,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오히려 거기에 안주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경영의 투명화 조치입니다. 회계감사를 철저히 객관적으로 더 잘 할 수 있게 하고, 지금 사외이사도 유명무실한데 좀더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사외이사제도를 운영하고, 또 지배주주의 지분도 공개하고, 구조조정실 체제도 장기적으로는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라든지 집중투표제 이런 것도 우리가 금방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시급한 것을 우리가 해 나가야지, 왜 느

닷없이 3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지배구조 개선부터 먼저 덜렁 들고 나와서…… 이 자체가 현실성이 지극히 의문시되는데 그 중에서도 의문시되는 것을 3개년 계획에 넣어서 하겠다 하는 것은 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오히려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지금의 출자총액 한도제의 불합리성을 시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00% 이하의 부채비율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오히려 독려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외조항은 말끔히 없애야 합니다. 무슨 IT산업이다, 유망산업이다 해서 자꾸 예외조항을 두어 남용이 심해지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출자총액 한도를 25%에서 40이면 40, 50이면 50%로 딱 현실화를 해서 한도를 새로 정하고 예외조항은 없애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도 초과 시에 지금은 의결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완전히 유명무실하단 말이에요.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을 우리가 강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출자총액 한도도 원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지, 지금처럼 완전히 혼란만 조장하고 예외조항이라는 항목 때문에 재벌들이 이것을 남용하는 사태는 빨리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한다는데 완화를 한다는 것이 기껏해야 부채비율 100%를 1년에 달성하던 것을 2년으로 1년 연장해 준다 그런 정도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주회사 설립요건도 출자총액 한도와 연계해서 우리가 좀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하면 출자총액 한도도 좀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차피 지주회사 요건 완화와 출자총액 한도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졸업제도 등 이런 제도는 그때 가서, 내년에 가서 출자총액 한도법을 고칠 때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현 위원 한나라당 이성현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검찰에서 대선자금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조정실장님, 이렇게 조사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제가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이성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조사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사를 투망식으로 전 대기업들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조사방식이 경제활동 부분에서 위축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경제활동 면에서 보면 사실 지장이 많지요. 지장이 많아서 경제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제발 좀 빨리 마무리 짓기를……

○**이성헌 위원** 제가 지금 저희 지역에도 보니까 시장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폭동을 일으키겠다”고까지 하더라고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폭동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혐의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또 그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양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성헌 위원** 총리를 모시고 계시니까 또 이렇게……

물론 한나라당이 지금 비자금을 받은 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그런 차원보다는, 그러니까 차체에 나올 만큼 나온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제 경제도 회생시키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면에서 총리를 통해서 수사를 적절하게 하도록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그쪽에 뜻을 전달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지난 11월 8일과 11월 10일 사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를 가지고 갔지요? 특히 LG그룹과 관련해서요.

○**公正去來委員長 姜哲圭**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헌 위원**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을 나와 있는 검사가 몇 분이 계십니까?

○**公正去來委員長 姜哲圭**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헌 위원** 그 파견 나온 검사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公正去來委員長 姜哲圭** 안 나와 있습니다.

○**이성헌 위원** 파견 나온 분들은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公正去來委員長 姜哲圭**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판을 한 경우에 송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송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성헌 위원** 송무 담당은 변호사들이 주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公正去來委員長 姜哲圭** 물론 우리가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전에 일체 업무를……

○**이성헌 위원** 그러면 지금 파견을 나와 있는 두 분 검사의 원 소속이 어디입니까?

○**公正去來委員長 姜哲圭** 소속은 법무부지요.

○**이성헌 위원** 그런데 이번에 2000년도 LG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한 자료를 그 검사들을 통해서 수집해 갔습니까?

○**公正去來委員長 姜哲圭** 예, 우리 법률자문관실이 송무 담당이기 때문에 그전에 심결된 내용들이 그쪽을 통해서 갔지요.

○**이성헌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자료를 가져가는 것은 송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보면 얼마든지 심결서를 출력해 가지고 다 볼 수 있는 공개된 자료입니다.

○**公正去來委員長 姜哲圭** 예.

○**이성헌 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파견 나와 있는 검사를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公正去來委員長 姜哲圭** 아마 그쪽에서 공개된 의결서를 법무부 파견 검사실에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가 전달한 것뿐이지요. 특별한……

○**이성헌 위원** 아니, 그러면 요청한 자료가 어떠한 자료였습니까?

○**公正去來委員長 姜哲圭** 조사국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公正去來委員會調查局長 張恒碩** 그 파견 검사를 통해서 연락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2000년도

4월……

○이성헌 위원 파견 검사를 통해서 연락이 온 때가 언제지요? 11월 8일입니까?

○公正去來委員會調查局長 張恒碩 그 전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결서 있지 않습니까? 의결서를 보내 줬습니다.

○이성헌 위원 그것은 어떤 의결서였습니까?

○公正去來委員會調查局長 張恒碩 LG, 4차 2000년에 조사한……

○이성헌 위원 4차 2000년?

○公正去來委員會調查局長 張恒碩 예, 99년도 LG 관련 여러 건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한 건이 아니고 LG와 관련된 여러……

○이성헌 위원 2000년도 겁니까, 아니면 99년도 겁니까?

○公正去來委員會調查局長 張恒碩 99년도 건입니다.

그래서 의결서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나온 책자……

○이성헌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의결서는 공개되어 있는 것인데 굳이 왜 파견 나온 검사를 통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오도록 하느냐 이겁니다.

○公正去來委員會調查局長 張恒碩 아마 그쪽에서는 그런 내용이 공개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헌 위원 사실을 몰라서 그렇다?

○公正去來委員會調查局長 張恒碩 예, 그래서……

○이성헌 위원 아니, 천하의 대검 중수부에서 그런 사실도 모르고 일하면 됩니까?

○公正去來委員會調查局長 張恒碩 공개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책자가 검찰에 비치되어 있지……

○委員長 李在昌 조사국장, 그 답변이 내가 들어도 납득이 안 가는 게 적어도 어느 기관에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할 때는 그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자료를 가져와라, 말아라’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것은 사실대로 좀 답변을 하세요. 왜, 무엇을 요청을 했나……

○이성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자료 요청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에 불러가서 조사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公正去來委員會調查局長 張恒碩 그래서 저희

들이 의결서를 보내 주었습니다. 검찰 편에 보내 주고, 그래서 그 당시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이 잠시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성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정위에서 대검 중수부로 가서 설명했던 말이지요?

○公正去來委員會調查局長 張恒碩 예.

○이성헌 위원 누가 갔었습니까?

○公正去來委員會調查局長 張恒碩 그 당시 그 사건, LG화학을 담당한 김철식 6급 주사입니다.

○이성헌 위원 그런데 그때 6대 그룹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했었는데 김철식 주사한테 “이미 지적된 사항 말고 지적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느냐 해서 자료를 더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公正去來委員會調查局長 張恒碩 그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성헌 위원 아니, 이 사실은……

○公正去來委員會調查局長 張恒碩 하여튼 LG화학에 대해서 의결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하신 자료를 가져가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 결과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들으신 적이 없어요?

○公正去來委員會調查局長 張恒碩 그런 사실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성헌 위원 김철식 씨가 다녀왔으니까 이것 확인할 수 있지요?

○公正去來委員會調查局長 張恒碩 예, 그렇습니다.

○이성헌 위원 확인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까?

○公正去來委員會調查局長 張恒碩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성헌 위원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公正去來委員會調查局長 張恒碩 예, 알겠습니다.

○이성헌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필요하면 당연히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쥐어짜는 방식으로 기업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심지어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이렇게 압박을 가한다는 것

은 제가 보기에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찌자고 이러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개적으로 되어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면서 특정사의 영업 비밀에 속하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께서는 어떠한 자료를 대검 중수부에 제출했는지 그 자료 목록을 만드셔서 가지고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公正去來委員長 姜哲圭 예, 그렇게 하지요.

○이성현 위원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권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존경하는 金元吉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金文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두 분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안심사소위를 할 때 그 두 분들과 상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昌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겸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아까 하신 것은 중복을 안 하시지요?

○김부겸 위원 예, 안 합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아까 통합복권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도대체 왜 정부기관이 나서서 복권에 대한 수익의 관리와 배분까지 신경을 쓰느냐”라는 위원들의 질타에 “우리 현실을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현실입니까? 그것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아까 金文洙 위원님이 애초에 복권 기득권 그룹이 생겼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의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정부 내에서 이게 10개 부처에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리에 따라서는 각 부처가 개별 발행하는 것도 논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개별 발행을 했을 때 관리가 되지 않고, 기금 사용이 투명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더구나 금년에는 10개 부처에서 가져가는 복권 수입을 한 1000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봐서는 이게 1조가 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 1조가 넘는 막대한 금액을 저희가 총리실에서 관

리하는 것도 관리할 데가 없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10개 부처의 용도를 보면 전부 저소득층, 취약계층…… 하나하나 보면 정말 꼭 필요 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은 복권을 통해서 할 사업이 아니고 재정에서 도와주어야 할 사업입니다. 예산을 제대로 못 따니까, 예산을 따기가 어려우니까 국회에 와 가지고 각 개별 부처에서 의원입법을 만든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 태생부터 잘못된 겁니다. 10개의 복권이 어느 하나도 의원입법으로 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왜 기획예산처에 이것의 통합관리를 맡겼는가 하니까 이 10개 기금의 현재 사업, 10개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장차 재정이 전부 떠맡아라, 전부 재정이 떠맡아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꼭 필요한, 법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이나 이런 몇 개 사업만 앞으로 복권사업을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평소에 10개 부처에서 하던 이런 사업들은 재정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된다, 재정이 지금까지 잘못됐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국회에 와 가지고 의원입법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무질서하게 되어 있다, 제가 그 점을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이번에 기획예산처에서 이것을 하더라도 기획예산처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재원 배분이나 복권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것은 총리실에 있는 복권제도심의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는 배정된 자금을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기능만 있지 별다른 큰 권한은 없습니다.

○김부겸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대표적인 일종의 역진세 제도를 떠맡을 생각은 안 하고 이런 편법을 쓴다는 데에 대한 질타 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예, 알겠습니다.

○김부겸 위원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처차관에게도 확인했습니다마는 제20조제3항제6호에 보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사업”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표현함으로써 혹시 기획예산처가 자의적으로 이 기금의 배분 권한을 갖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복권제도심의위원회에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획 예산처가 이걸 맡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즉 여기에서 무슨 재원을 기획예산처가 일반 재정수입으로 가져갈 의도에서 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부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권제도심의위원회 구성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2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과 민간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한다 이런 것이 혹시 내부적으로……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현재는 없고요, 민간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보통 다른 것들을 보면 시행령이 나오면 법안에 대충 민간과 공무원의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한다 정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거 없습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25명 할 때, 관련 부처가 10개입니다. 관련 부처에서 10명이 참석하면 민간이 15명이 되기 때문에 민간 쪽의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김부겸 위원** 그럼 됐습니다.

지금 “금년에 1조 이상 수익금이 늘어남으로써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리 주체들이 결산 명세서를 제출하거나 복권 수익금을 어디에 쓰겠다고든가 사용 신청에 관한 규정은 있는데 만약 이 사람들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 쓰지 않았을 경우에, 잘못된 사용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불이익이라든가 제재 조치가 없네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현재 보면 금년에 계획했던 것보다 10배 이상 자금이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 부처의 기금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변화를 주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금년도에 가져가는 자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집행도 못하면서 변화의 기미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도 정말 딱 하고…… 저희가 애초에 각 부처에다가 30%를, 기존의 배분 비율 때문에 나눈 그것조차 없애려고 했습니다. 복권제도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한 한두 개, 두세 개 사업에 집중 배분하고 그 대신 이 모든 사업에 대한 지원은 예산을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시도를 했었는데 저희가 10개 부처를 다 설득을 못해서 30%는 종전대로 하고 나머지 70%만 가지

고 그렇게 하자 지금 이렇게……

○**김부겸 위원** 좋습니다.

정부 입장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이 법안이 정부로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될 절박성이 있는 거지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이것을 만약에 통과를 안 시키면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그것도 있지만 아까 金文洙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기득권 그룹이 생겨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변화 시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저희가 만남을 무릅쓰고 왔는데 만약에 법을 안 만들어 주시면 앞으로 복권 관리하는 정말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김부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장에게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법안하고도 연관되는 것인데 최근에 KCC그룹이 현대그룹의 오너가 상을 당한 와중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룹 경영권을 획득하려고 한 노력은 재벌들의 시장 개혁정신에 반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公正去來委員長 姜哲圭** 사실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영권, 말하자면 경영권 확보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시장경쟁 원리에 반한다고까지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부겸 위원** 공시를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公正去來委員長 姜哲圭** 아직은 그런 위법 사실은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김부겸 위원** 위장지분을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公正去來委員長 姜哲圭** 위장지분 매입……

○**김부겸 위원** 소위 말해서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해 가지고 우호지분을 획득하는 과정 말입니다.

○**公正去來委員長 姜哲圭** 그건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발견 안 되었습니다.

○**김부겸 위원** 이런 일련의 행위는 국민들이 재벌을 우리 경제의 견인차로 거듭 나가게 하려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보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公正去來委員長 姜哲圭** 장기적으로 보면 저 자신은 재벌들이 독립 경영체제로 선진국처럼 발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KCC가 현대그룹을 계열로 편입하려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재벌체제 안에서 누가 누구를 계열로 편입하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인 바람직한 추세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룹이 분할되어서 독립기업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현재로서는 위법적으로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쩔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적어도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는 KCC그룹쯤 되면 오너라든가 법인들의 유보된 내부 자본도 있을 것이고 개인자산도 있을 텐데 매집과정에서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공정거래 정신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금융권은 바로 이런 대기업들이 지금까지 축적된 명성과 이런 것을 이용해서 고객이 맡긴 돈을 이렇게 재벌그룹의 지분 싸움하는 데 이렇게 막 빌려 주어도 국민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公正去來委員長 姜哲圭** 국민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실을 전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확실한 결론을 낼 수 없지만 머지않아 저희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김부겸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초반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가지 과정상에 있어서의 법률적 문제점을 검토하겠다고 한 완강한 자세가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을 보니까 상당히 무더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시장개혁 3개년 계획까지 발표하신 공정위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언페어 플레이(unfair play)가 용납 되도록 아무 손을 쓸 수 없다면 도대체 대한민국 재벌정책이라는 건 어디 있습니까? 결국 강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실적으로 시장 지배에 성공하면 추인이 되는 상황을 외국 자본들이 바라볼 때 한국 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심판 노릇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正去來委員長 姜哲圭**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부겸 위원** 이상입니다.

○**金文洙 委員**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께서 로또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현행 로또는 입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지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각 개별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 거지요.

○**金文洙 委員** 개별법이 개별 복권에는 있는데 로또는 입법적 근거가 없다……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로또 그 부분은 근거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수차 보고를 드렸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전문가의 해석을 받지 않았습니까?

○**金文洙 委員** 그러면 법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결론이 나거든요.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저희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통합법을 만든다기보다는 현재 개별법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통합법을 만드는 것이지요.

○**金文洙 委員**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정부부처에서 발행한 열 가지는 다 입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발행목적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또는 지금 입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로또가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벌이를 해 주고 있는 과열된 로또 열기가 보다 더 냉각되기 위해서는 지금 발행금액을 2000원으로 하고 있는데, 한 번 하는데 2000원이고 1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1000원으로 낮추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도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부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KLS와 국민은행, 로또 판매업자, 대행업자 등과 마찬가지로 정부 자체가 가장 큰 기득권 그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0개 부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국무조정실장께서 위원장으로 있는 심의위원회, 즉 정부도 냉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답변에 예산처장관이 할 수 있는 건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데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예산처장관이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처장관이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예산처장관이 이것을 말하면 대한민국 예산 전체가 부도덕한 도박판에서 나온 것으로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또로 벌었던 부분이 제대로 쓰이는지 반드시 국회에 보고되도록

이번에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즉 로또 하는 사람들이 서민들이고 그 서민들의 돈이 용도에 맞게 쓰인다는 것을 국회가 반드시 체크를 해 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것이 입법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현재 이 로또는 무법천지이기 때문에 이런 과열과 부작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입법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처장관이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총리실이 계속 하라는 말입니까? 공직사회에서 자기 업무를 한 가지도 놓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본성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따져 보아도 이 업무를 총괄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예산처장관이 하도록 한 것은 예산처에서 여기의 자금을 이용해서 예산 지출재원으로 써라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10개 사업을 앞으로 예산처가 맡아 가고 여기에 있는 자금은 앞으로 집중적으로 몇 가지 소수부문에 쓰도록 하자, 물론 그 과정을 예산처장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복권제도심의위원회에서 그 용도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昌 실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의한 사항 중에 복권에 관한 기본법안,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법안에 관해 주로 의견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金文洙 위원께서 또 다른 위원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권한을 주고 실제로는 국무조정실장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일관되게 하시는데, 위원장 생각에는 실제로는 국무조정실장이 다루면서도 법상 제안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오늘 제안하게 된 이 현실은 앞으로도 이 문제가 똑같은 현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라도 소관부처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 준 사항에 대해서

는 앞으로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결위도 열려 있고 특별위원회도 열려 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12건의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다 개진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오늘 이 회의를 마친 후에 각 위원실에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일단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6일에 전체회의를 할 때 ‘나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소위원회에서 11월 24일까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23일까지는 각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시도록 각 방에 위원장 명의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아까 질의한 사항 중에 위원장이 듣기에도 좀더 자료가 충분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권및복권기금법안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그간 각 부처 간에 여러 가지 회의도 했고 의견 조정과정 중에서 나왔던 얘기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더 정리를 해서 정부에서 이 법안을 앞으로 어떻게 다루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심사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사전에 제출해 주시고, 특히 金文洙 위원께서는 복권의발행및관리에관한기본법안 발의자로서 아까 중요한 사항은 구두로 말씀을 하셨지만 심사 위원들께 좀더 자세한 자료를 제공을 하셔서 정말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복권의발행및관리에관한기본법안이 심도 있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률안심사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간에 쫓겨서 만에 하나라도 전체회의에 차질이 있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들께서는 오늘 전체회의 산회 후 소위 개최에 대한 논의를 하셔서 계획대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회의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許成寬 행정자치부장관, 또 朴奉欽 기획예산처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한 卞良均 차관, 그리고 李永鐸 국무조정실장, 姜哲圭 공정거래위원

장, 李承姬 청소년보호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법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제안설명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3. 11. 21

國會議員 李 訓 平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이훈평 의원입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행 약관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표하거나 기존 고객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7조의2제3항), 행정관청이 약관을 작성 또는 인허가 하는 경우 공정위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안 제18조제3항), 표준약관의 제정에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보호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9조의2제3항 내지 제5항)

약관에 의한 계약은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또한, 소비자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약관 관련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표준약관의 보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관규제법은 법 제정 당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법체계상, 법 집행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약관법개정안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소비자보호라는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들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3. 11. 21

國會議員 李 訓 平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이훈평 의원입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원에게 새로이 압수·수색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정위 조사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에 관한 조사 기피·방해 등에 대하여 엄격히 대처하기 위하여 조사권을 강화하여 압수·수색권을 조사공무원에게 부여하도록 하고(안 제50조제9항), 조사공무원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50조제10항)

현행법상 공정위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해도 과태료만 부과되어 실질적인 조사에 애로가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거액의 과징금을 내는 것보다 이익이라는 생각에서 조사거부·방해사태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과 EU 등 선진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경쟁당국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정거래법개정안은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들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3. 11. 21

국회의원 안 대 룬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안대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20인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게 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여러 정무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명제청권을 위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것은 합의체기관의 근간을 이루는 공정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제청에 갈음하여 다양한 전임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개선하는 한편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 운용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기타 위원(상임위원·비상임위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위원장이 제청하는 대신에 다양한 추천기관이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37조)

둘째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법의 입법상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안 제37조의2 신설)

존경하는 정무위원 여러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검찰로서 기업의 생사여탈을 좌우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기타 위원의 제청권을 위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위원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함으로써 지난번 언론사 과징금 부과취소 과정이나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구속에서 알 수 있듯이 위원회가 합의체기관으로서의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위원임명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원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제도적·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의 임면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 관련규정의 기본사항이지만 현행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원의 결격사유를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 여러분!

동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정부조직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기관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을 감안하여 현행법 제37조(위원회의 구성 등)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요건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공성을 살리되, 위원장에 의한 위원제청권의 독점을 막기 위해 추천기관에 의한 추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동 개정안과 같이 다양한 추천기관에 의해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경제계대표, 소비자대표 등 관련 분야를 대표하는 자가 각각 1인씩 포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37조의 2항(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위원회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인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의 누락 또는 흠결시에 제기될 수 있는 입법상 미비라는 문제의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정무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3. 11. 21

국회의원 김 부 겸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요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과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원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법 적용대상이 되는 원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마련하며 셋째,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의무 미이행에 따른 발주자의 직접지급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 사업자 범위 확대에 대한 본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현재 원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사업자를 원사업자에 포함하여 법 적용의 대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이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자를 원사업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법적용에 따르는 각종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원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자가 법 적용 대상자가 아님을 악용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자행하는 등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거래한 상대방은

수급사업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원사업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중소기업자를 법 적용 대상자로 함으로써 이들도 법에 따르는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들과 거래한 상대방이 수급사업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본 개정안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한 때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본 개정안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밝힌 바 있지만,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불균형관계는 국민경제 전체의 균형적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제도를 개선·보완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번 개정 법률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靑少年保護法中改正法律案

2003. 11. 21

國會議員 林 仁 培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입니다.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 청소년 문제 원인 중의 하나로 청소년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환경적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격형성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환경의 영향은 실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학교주변까지 과도하게 살포되어 범람하고 있지만 실정법에서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전혀 없어서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고 있으므로 유해매체물의 광고선전을 제한하는 장소에 유치원·초등학교·고등학교 주변도 포함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선전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청소년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出席委員(15人)

김 만 제	金 文 洙	김 부 겹	金 元 吉
金 允 式	박 병 석	안 대 룬	嚴 虎 聲
이 성 현	李 在 昌	李 訓 平	林 鎭 出
田 瑢 源	정 범 구	鄭 亨 根	

○請暇委員(1人)

이 해 찬

○出席專門委員

수 석 전 문 위 원	尙 元 鍾
전 문 위 원	金 昊 晟

○政府側參席者

국무조정실

국 무 조 정 실 장	李 永 鐸
기 획 수 석 조 정 관	趙 泳 澤
총 괄 심 의 관	金 秀 道
일 반 행 정 심 의 관	金 錫 民
외 교 안 보 심 의 관	申 正 秀
경 제 조 정 관	朴 鍾 九
재 경 금 융 심 의 관	權 赫 世
산 업 심 의 관	禹 周 河
농 수 산 건 설 심 의 관	金 昊 源
사 회 수 석 조 정 관	崔 慶 洙
복 지 심 의 관	朴 鐵 坤
노 동 여 성 심 의 관	李 弼 雲
교 육 문 화 심 의 관	鄭 東 勳
안전관리개선기획단부단장	宋 光 運
심 사 평 가 조 정 관	李 正 煥
심 사 평 가 1 심 의 관	權 忠 植
심 사 평 가 2 심 의 관	車 義 煥
조 사 심 의 관	具 本 榮
규 제 개 혁 조 정 관	朴 琦 鍾
규 제 개 혁 1 심 의 관	宋 裕 鐵
규 제 개 혁 2 심 의 관	崔 大 鎔
연 구 지 원 심 의 관	金 春 錫
수 질 개선기획단부단장	俞 宗 相

청소년보호위원회

위	원	장	李承姬
사	무	국	車政燮

공정거래위원회

위	원	장	姜哲圭
부	위	원	趙學國
사	무	처	姜大衡
공	보	관	南善祐
기	획	관	金範祚
심	관	관	朴商龍
정	책	국	李炳周
독	점	국	李東揆
경	쟁	국	鄭在燦
소	비	자	孫寅玉
하	도	급	李銅焄
조	사	국	張恒碩

행정자치부

장	관	許成寬
---	---	-----

기획예산처

차	관	下良均
---	---	-----